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36
----------	-----

2015. 10. 21.(수)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5년 10월 2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10월 12일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일부를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변속차로의 설계도면 작성 방법 신청서류 추가(안 제4조)
-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명확화 및 기준 완화(안 제6조, 별표 4)
- 변속차로 최소길이 및 접속부 곡선반지름 완화(안 제8조)
- 변속차로 등의 설치방법 다양화 및 기준 완화(별표 2, 별표 5)
- 분리대의 종류에 교통섬 추가(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김학두)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도로법」 제51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와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 지방 규제개혁 차원의 관련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한자와 병행 표기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였으며,
- 기타 조문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완화된 규정에 따른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보전”을 “보전(補填)”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차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가드레 일”을 “방호울타리”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10.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11. “갓길”이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2. “연석”이란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적용범위)”를“(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측으로 진·출입”을 “오른쪽으로 진입하거나 진출”, “도로 등”을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따른 연결외의 연결하는 경우에는”을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4조 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로 등”을 “시설”로, “도로 등의”를 “도로와 다른 시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등”을 “도로와 다른 시설”로,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설계도면”을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 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도로 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 주차 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도로 등”을 “시설”, “확인요청할”를 “확인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를 “경우 이에 따라야”로 한다.

4.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

제5조제1항 중 “도로 등”을 “시설”로, “도로 등”을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로 등”을 “시설”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곡선반경”을 “곡선반지름”으로, “별표3에서”을 “별표 3에서”으로, “시거”를 “시거(視距)”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종단기울기”를 “종단(縱斷)기울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영향권 산정”을 “연결 금지구간 산정(算定)”으로, “별표4의2의”를 “별표 4의”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농어촌도로정비법」”을 “「농어촌도로 정비법」”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초래하는”을 “불러일으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를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교량”을 “다리”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반경 15미터 이상”을 “반지름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절토부”를 “절토(切土)부”로, “설치”를 “설치할 것”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호 중 “초래할”을 “불러일으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반경 15미터 이상”을 “반지름 12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길어깨”를 “갓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을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콘크리트 측구”를 “콘크리트 측구(側溝)”로, “토사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이내의 일정”을 “토사 등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오수 또는 우수가”를 “더러운 물 또는 빗물이”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콘크리트측구로”를 “콘크리트 측구(側溝)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전면”을 “앞면”으로, “길어깨”를 “갓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가드레일”을 “방호울타리, 교통섬(별표 2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에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0.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를 “0.3미터(교통섬은 0.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視距)장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콘크리트 측구”를 “콘크리트 측구(側溝)”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식별할”을 “알아볼”로, “부착하거나”를 “붙이거나”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변속차로등의 길어깨)”를 “(변속차로등의 갓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길어깨는”을 “갓길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길어깨는 접속되는 지방도의 길어깨와”를 “갓길은 접속되는 지방도의 갓길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길어깨가”를 “갓길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을 “갓길 바깥쪽에 연석,

방호울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길어깨”를 “갓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을 “갓길 바깥쪽에는 방호울타리”로, “보호길어깨를”을 “보호갓길을”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가드레일”을 “방호울타리”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분담은 허가 받은 자간의”를 “분담(分擔)은 허가 받은 자간의”로 한다.

제14조 중 “도모하고”를 “높이고”로 한다.

제1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u>도로</u> <u>등과의</u> 연결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지방도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 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u>보전함</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생략)</p> <p>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u>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u>를 말한다.</p> <p>2. (생략)</p> <p>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u>가드레일</u>,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p> <p>4. ~ 6.(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u>시설의</u> 연결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 ----- ----- ----- ----- ----- <u>보전(補填)함</u>----- --.</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 차로----- -----.</p> <p>2. (현행과 같음).</p> <p>3.----- ----- ---- <u>방호울타리</u>, ----- -----.</p> <p>4. ~ 6.(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7. <u>“교차로 영향권”이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의하여 차량 운행이 영향을 받는 구간을 말한다.</u></p> <p>8.(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지방도(법 제23조제2</p>	<p>7. <삭제></p> <p>8.(현행과 같음).</p> <p>9. <u>“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u></p> <p>10. <u>“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u></p> <p>11. <u>“갓길”이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u></p> <p>12. <u>“연석”이란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u></p> <p>제3조(적용 범위) ①----- ----- -----</p>

현행	개정안
<p>항이 적용되는 지방도를 제외한다)에 차량 진행 방향의 <u>우측으로</u> <u>진·출입</u>할 수 있도록 다른 <u>도로</u> <u>등</u>을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p>	<p>----- ----- <u>오른쪽으</u> <u>로 진입하거나 진출</u> -----<u>도로,</u> <u>통로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u> <u>설”이라 한다)</u>----- -----.</p>
<p>② 제1항에 <u>다른 연결외의 연결하는</u> <u>경우에는</u>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u>의한다</u>.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u>제4조 제1항</u> 및 제2항에 따른다.</p>	<p>② --- <u>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u> ----- ----- <u>따른다.</u> ----- ----- <u>제4조제1항</u> ----- -----.</p>
<p>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제52조제1항에 따라 지방도에 다른 <u>도로</u> <u>등</u>을 연결시키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u>도로</u> <u>등</u>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 ----- -- <u>시설</u> ----- ----- <u>도로와 다른 시설</u> - ----- -----.</p>
<p>② 제1항에 따른 <u>도로등의</u>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u>첨부하여야</u>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부가차로·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등"이라 한다) 및 	<p>② ----- <u>도로와 다른 시설의</u> ---- ----- <u>붙여야</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현행과 같음) 2. ----- -----

현행	개정안
<p>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p> <p>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p> <p><u><신설></u></p> <p>③ 1.~ 4.(생략)</p> <p>5. <u>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u></p> <p>④(생략)</p> <p>⑤지방도에 다른 <u>도로</u>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연결허가 신청 이전에 연결을 하고자 하는 지방도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를 도지사에게 <u>확인요청할</u>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u>때에는 이에 응하여야</u> 한다.</p> <p>⑥(생략)</p>	<p>-----(<u>점용장소의 면적은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u>)</p> <p>3.(현행과 같음)</p> <p>4. <u>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u></p> <p>③ 1. ~ 4.(현행과 같음)</p> <p>5. 도로 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 주차 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p> <p>④(현행과 같음)</p> <p>⑤ ----- <u>시설</u> -----</p> <p>----- <u>확인 요청할</u> -----</p> <p>-----<u>경우 이에 따라야</u> -----.</p> <p>⑥(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①도지사는 「국통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지방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 중 제1단계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시공 중인 지방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① ----- ----- ----- -- 시설 ----- ----- ----- 시설 ----- ----- ----- ----- ----- ----- ----- ----- ----- ----- ----- ----- -----</p> <p>② ----- --- 시설 ----- ----- ----- ----- ----- ----- ----- ----- ----- -----</p>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생략)	제6조(연결금지구간)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1. <u>곡선반경</u>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u>별표3에</u> <u>서</u>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u>시거</u>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p> <p>2. <u>종단기울기</u>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해서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p> <p>3. 지방도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는 별표 4의 교차로 <u>영향권 산정</u>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u>별표 4의2의</u>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 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로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제5조</p>	<p>1. <u>곡선반지름</u> ----- ----- ----- ----- <u>별표 3에</u> <u>서</u> ----- ----- <u>시거(視距)</u> ----- -----</p> <p>2. <u>종단(縱斷)기울기</u>----- ----- ----- ----- ----- -----</p> <p>3. ----- ----- ----- <u>연결 금지</u> <u>구간 산정(算定)</u> ----- ----- <u>별표 4의</u>----- ----- ----- ----- ----- -----</p>

현 행	개 정 안
<p>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방도에는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 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에 <u>한한다</u>.</p> <p>가. (생략)</p> <p>나. 「<u>농어촌도로정비법</u>」 제4조의 규정에 <u>의한</u>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도로</p> <p>다. (생략)</p> <p>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 련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도로연결 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u>초래하는</u> 도로</p> <p>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u>내·외부 명암의 차 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u> 어려 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 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구간</p> <p>가. ~ 나. (생략)</p> <p>5. <u>교량</u>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p> <p>6. (생략)</p> <p>제7조(변속차로등의 포장 등) (생 <u>략</u>)</p>	<p>----- ----- ----- -- <u>한정한다</u>. 가. (현행과 같음) 나. 「<u>농어촌도로 정비법</u>」 ----- ---- <u>따른</u> ----- ----- 다. (현행과 같음) 라. ----- ----- ----- 불러일으키는 --- 4. ----- ---- <u>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 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u> --- ----- ----- 가. ~ 나. (현행과 같음) 5. <u>다리</u> ----- ----- 6. (현행과 같음) 제7조(변속차로등의 포장 등) (현행 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8조(변속차로) 1. ~ 3. <u>(생략)</u></p> <p>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u>반경 15미터 이상</u>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p> <p>5. 성토부 <u>절토</u>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지방도와 같거나 완만하게 <u>설치</u></p>	<p>제8조(변속차로) 1. ~ 3. (현행과 같음)</p> <p>4. ----- ----- <u>반지름 12미터 이상</u> -----</p> <p>5. ---- <u>절토(切土)</u> ----- ----- <u>설치할 것</u> -----</p>
<p>제8조의2 (부가차로) <u>(생략)</u></p> <p>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인접한 두 개 이상의 사업부지를 진·출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변속차로가 서로 겹치거나 근접되어 본선 도로의 엇갈림 현상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u>초래할</u>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접된 사업부지 사이를 부가차로로 연결하고 단일진·출입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2. <u>(생략)</u></p> <p>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u>반경 15미터 이상</u>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p>	<p>제8조의2 (부가차로) (현행과 같음)</p> <p>1. ----- ----- ----- ----- ----- ----- <u>불러일으킬</u> ----- ----- ----- -----</p> <p>2. (현행과 같음)</p> <p>3. ----- ----- <u>반지름 12미터 이상</u> ----- -----</p>
<p>제9조(배수시설) <u>(생략)</u></p>	<p>제9조(배수시설)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u>길어깨</u> 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1. ----- ---- <u>갓길</u> ----- -----
2. 기존의 <u>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u> 연결할 것	2. ----- <u>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u> ----- -----
3. 접속되는 지방도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u>콘크리트 측구</u>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u>토사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이내의 일정</u>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3. ----- ----- ----- ----- ----- ----- 콘크리트 측구(側溝)----- ----- ----- ----- -----토사 등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한----- -----
4.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u>오수 또는 우수가</u>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있는 유효폭 30센티미터 이상,	4. ----- - <u>더러운 물 또는 빗물이</u> ----- ----- ----- ----- -----

현 행	개 정 안
<p>유효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u>콘크리트측구</u>로 할 것</p> <p>제10조(분리대) (생략)</p> <p>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u>전면</u>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지방도의 <u>길어깨</u>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p> <p>2. 분리대는 화단, <u>가드레일</u>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인공구조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p> <p>3. 분리대는 높이 <u>0.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u>가 없도록 할 것</p> <p>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편속차로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u>콘크리트측구</u>를 설치할 것.</p>	<p>-----</p> <p>콘크리트 측구(側溝)-----</p> <p>제10조(분리대) (현행과 같음)</p> <p>1. -----</p> <p>----- <u>앞면</u>-----</p> <p>-----</p> <p>----- <u>갓길</u> -----</p> <p>-----</p> <p>2. ----- <u>방호울타리, 교통섬</u> (별표 2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에 한정한다) -----</p> <p>-----</p> <p>-----</p> <p>3. ----- 0.3미터(교통섬은0.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u>시거(視距)장애</u> -----</p> <p>4. -----</p> <p>-----</p> <p>-----</p> <p>-----</p> <p>----- <u>콘크리트 측구(側溝)</u> -----</p>

현행	개정안
<p>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p>	<p>5. ----- 알아 볼 ----- ----- 붙이 거나 ----- -----</p>
<p>6. ~ 7. (생략)</p>	<p>6. ~ 7. (현행과 같음)</p>
<p>제11조(변속차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p>	<p>제11조(변속차로등의 갓길) 갓길은 ----- -----</p>
<p>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지방도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1. ----- 갓길은 접속되는 지방도의 갓길과 ----- ----- - 갓길이 ----- ----- -----.</p>
<p>2. 변속차로등의 노면이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p>	<p>2. ----- ----- ----- -- 갓길 바깥쪽에는 연석, 방호울타리 ----- -----</p>
<p>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p>	<p>3. ----- 갓길 ----- -----</p>
<p>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길어깨를 확보할 것</p>	<p>4. ----- 갓길 바깥쪽에는 방호울타리 ----- 보호갓길을 -----</p>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부대시설) <u>(생략)</u></p> <p>1. <u>가드레일</u>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p> <p>2. <u>(생략)</u></p>	<p>제12조(부대시설) (현행과 같음)</p> <p>1. <u>방호울타리</u> ----- ----- ----- -----</p> <p>2. (현행과 같음)</p>
<p>제13조(공동사용) ① <u>(생략)</u></p> <p>② 변속차로 등의 공동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시설비의 <u>분담은 허가 받은 자간의</u> 합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진·출입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p> <p>③ <u>(생략)</u></p>	<p>제13조(공동사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분담(分擔) 허가 받은 자 간의</u> -----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등 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u>도 모하고</u>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변속차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p>	<p>제14조(공사시행) ----- ----- ----- <u>높</u> ----- <u>이고</u> ----- ----- -----</p>
<p>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5조(시행규칙) ----- <u>시행에</u> ----- ----- -----</p>

현행	개정안
	<p>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p> <p>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p>

[별표 1]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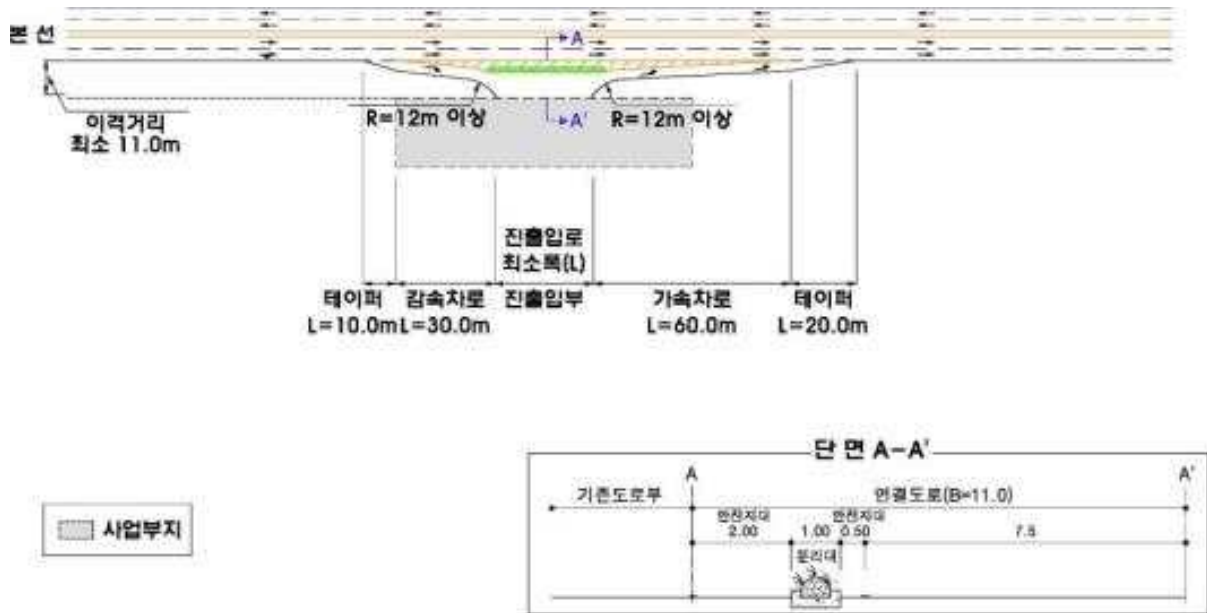
도면명	작성요령
위치도	1/50,000(또는 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 시설물의 위치 표시
평면도	연결부 주변의 지형·지물을 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 끝선, 길어깨선, 도로부지 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류화시설, 배수시설, 분리대, 그 밖의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
중단면도	세로 방향 1/1,200 이상, 가로 방향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측점(測點)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횡단면도	측점마다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 폭 양쪽으로 연결 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구조물도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부대공사도	변속차로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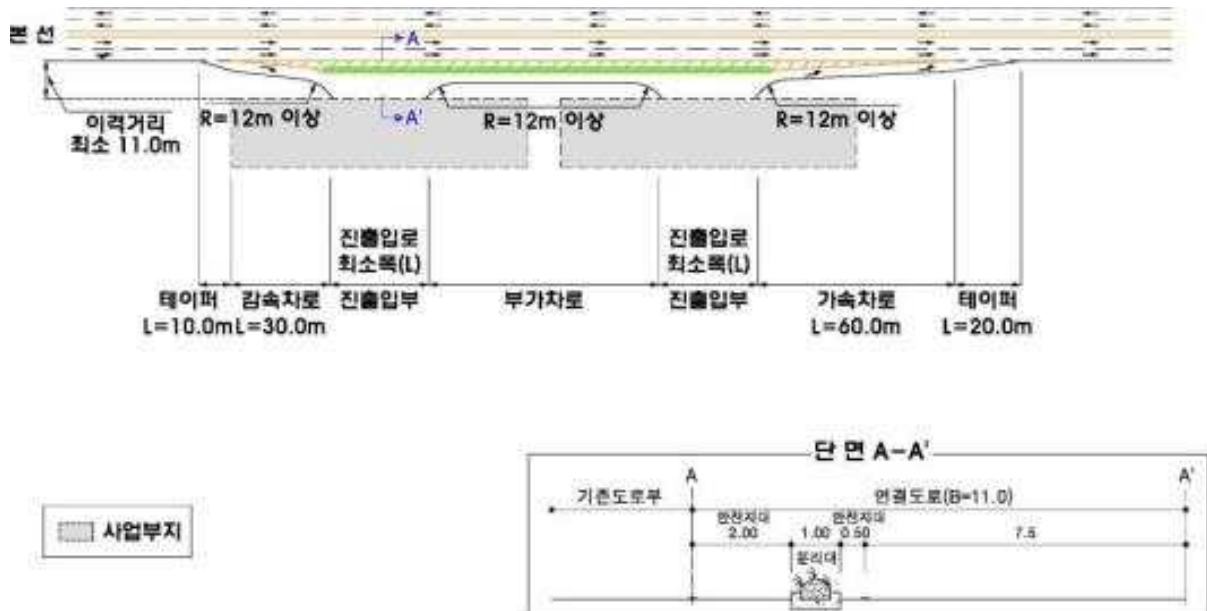
변속차로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 관련)

1. 직접식 변속차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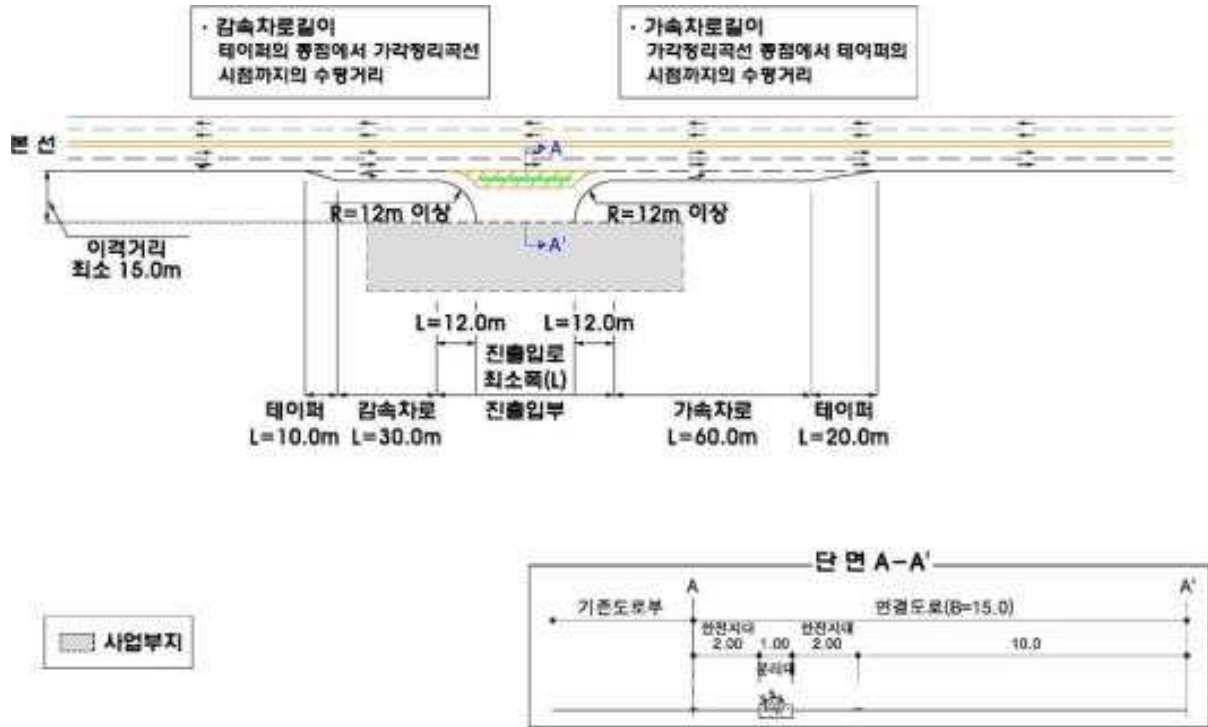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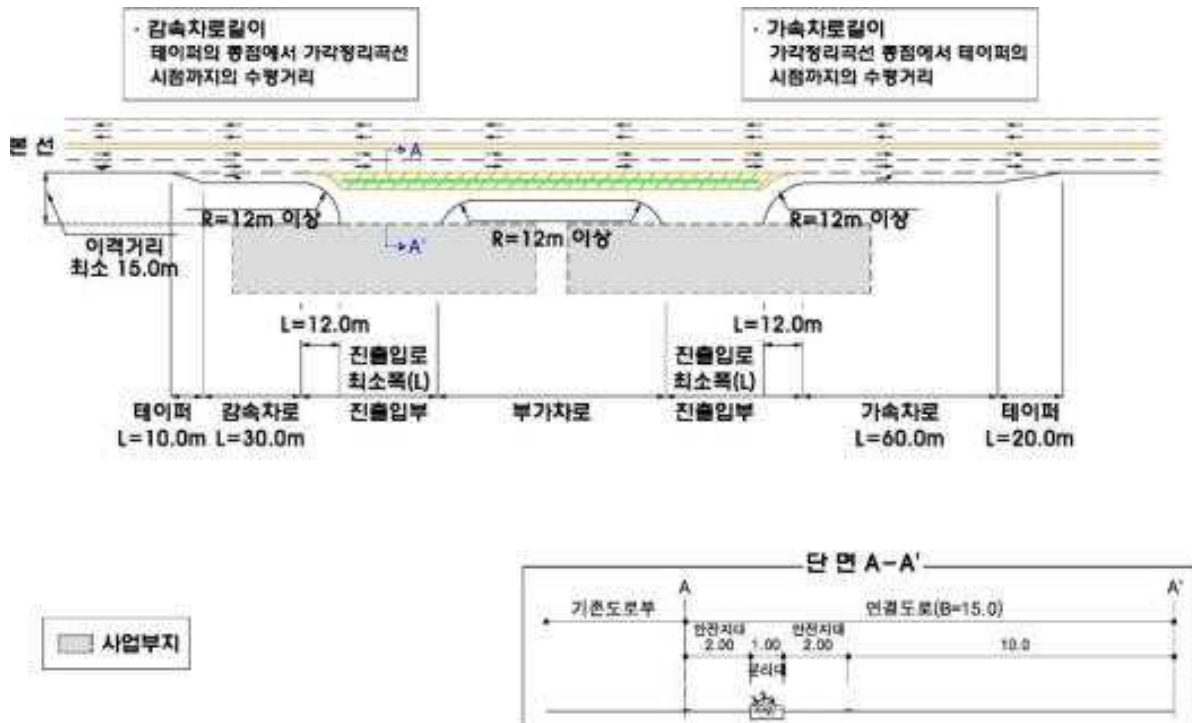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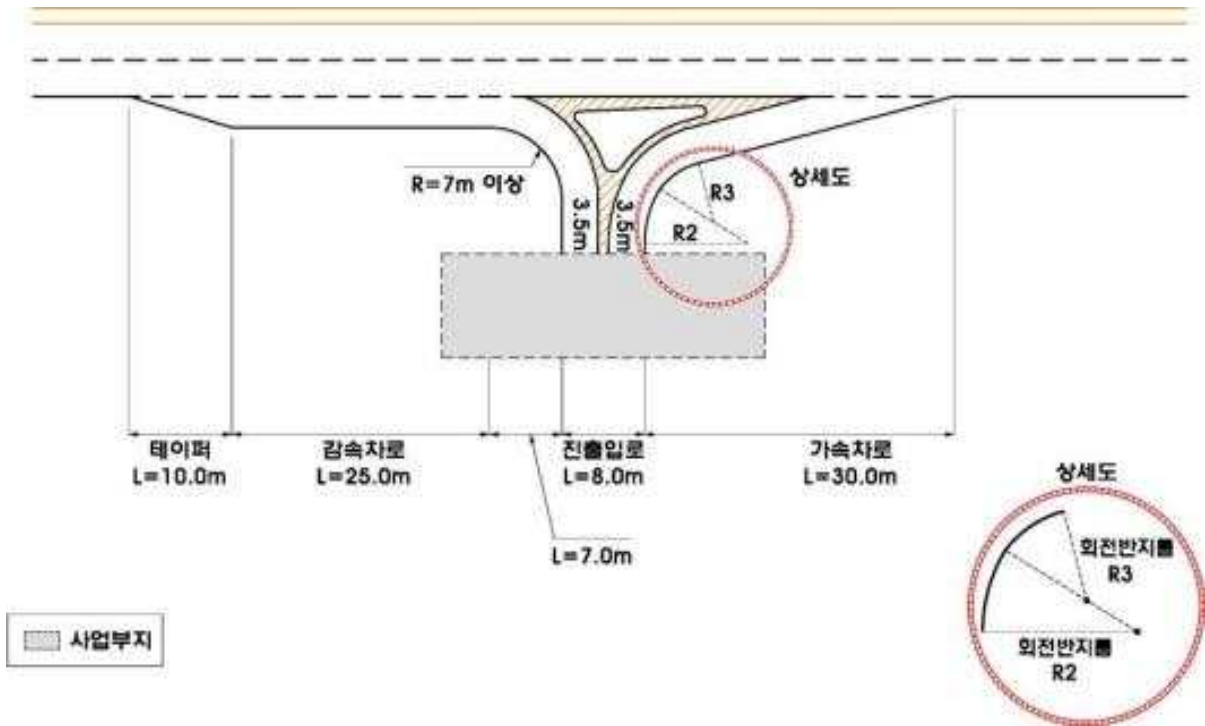
2.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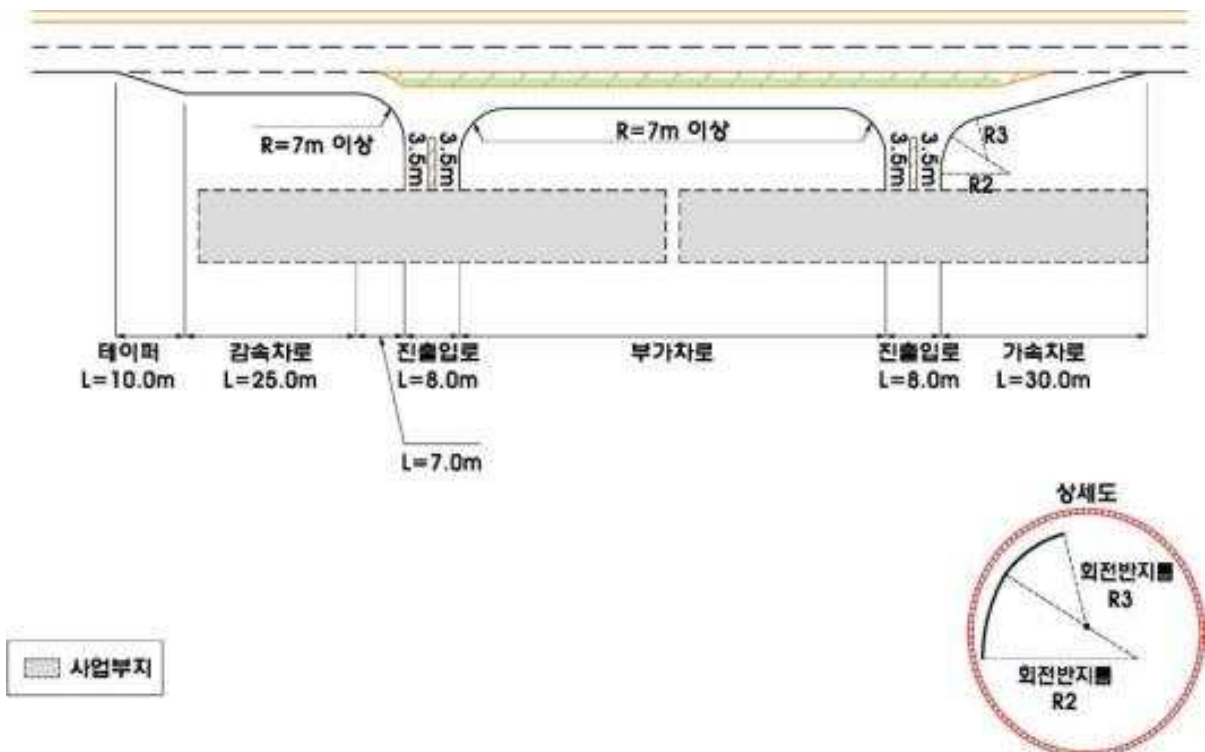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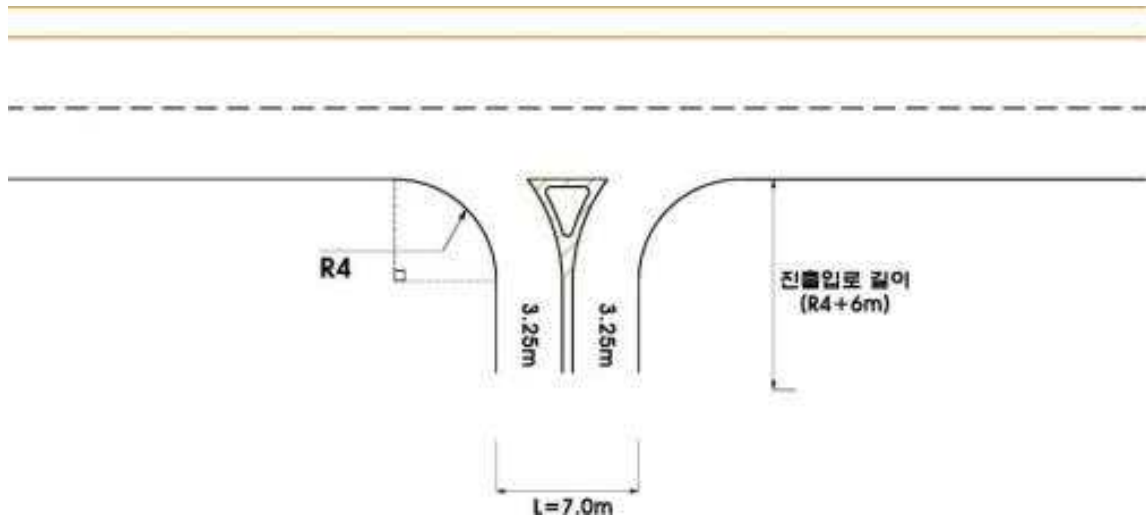
3. 평행식 감속차로와 직접식 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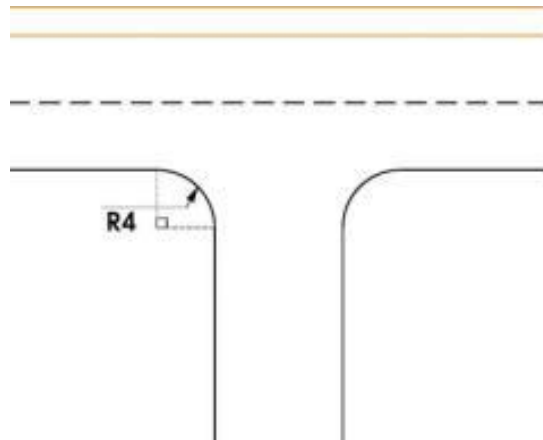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4. 도로의 모서리곡선화를 통한 변속차로 대체(代替) 설치
 가. 곡선 반지름(R_4) 5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곡선 반지름(R_4) 3미터 이하인 경우



비고

1. 위 표 중 R은 곡선반지름, L은 길이를 말하며 그 단위는 미터(m)로 한다.
2. 사업부지와 변속차로등의 연결지점은 부지경계선 중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위 표 중 이격거리는 본선 차도(길어깨를 제외한다)의 바깥쪽 차선과 사업부지 간의 최소 거리를 말한다.
4. 위 표 중 제1호와 제2호에서 진출입로 최소 폭(L)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 20m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10m로 한다.
 - 가. 별표 5 제1호의 시설란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사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아목(101가구 이상)
 - 나. 별표 5 제2호의 시설란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주차대수 31대 이상), 사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아목(101가구 이상)

5. 위 표 중 제3호가목과 제4호가목은 분리대를 교통섬의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6. 위 표 중 제3호에서 곡선 반지름 R_2 , R_3 의 크기는 가속차로의 길이에 따라 결정되며 그 최소 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가속차로의 길이(미터)	R_2 (미터)	R_3 (미터)
30	10	7
25	7	5
20	7	5

[별표 3]

곡선구간의 곡선반지름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6조제1호 관련)

(단위: 미터)

구 분	4차로 이상				2차로		
	곡선반경	260	240	220	200	120	100
최소거리	7.5	8	8.5	9	7	8	9

비 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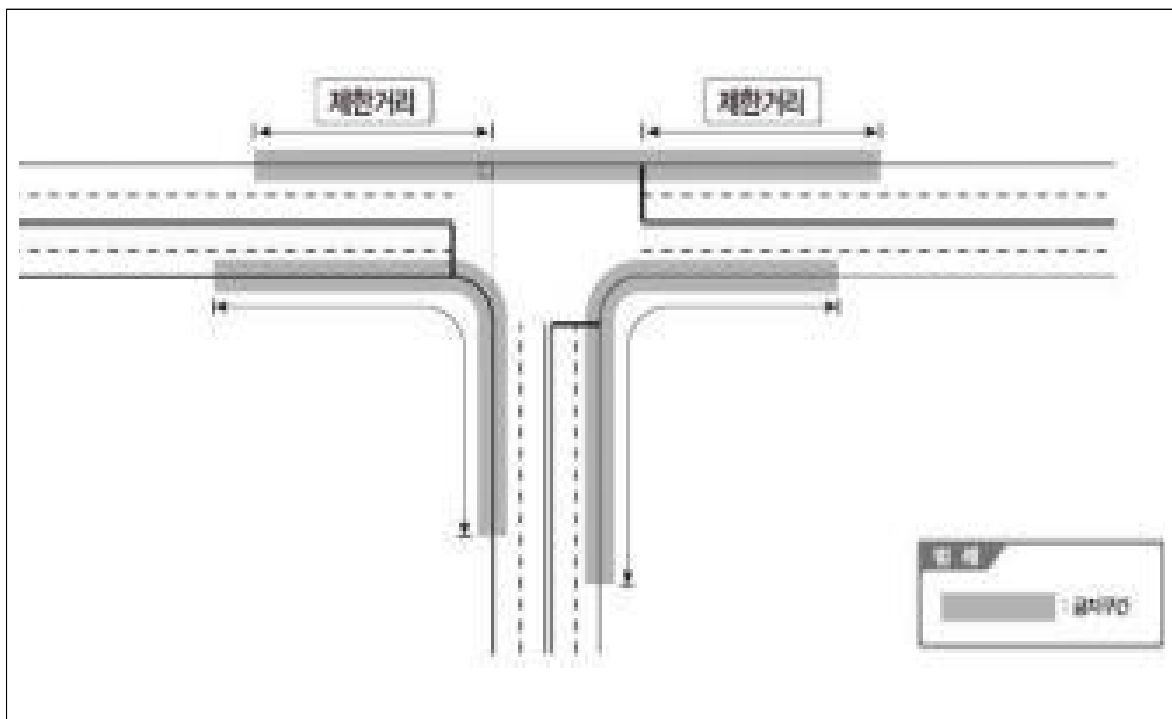
[별표 4]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제6조제3호 관련)

1.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연결 금지구간은 도로가 교차하는 물리적인 영역과 제한거리로 한다.
 - 나. 제한거리는 감속차선의 경우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산정하고, 가속차선의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그 밖의 지역
50	25	40
60	40	60
70	60	85
80	70	100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2.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도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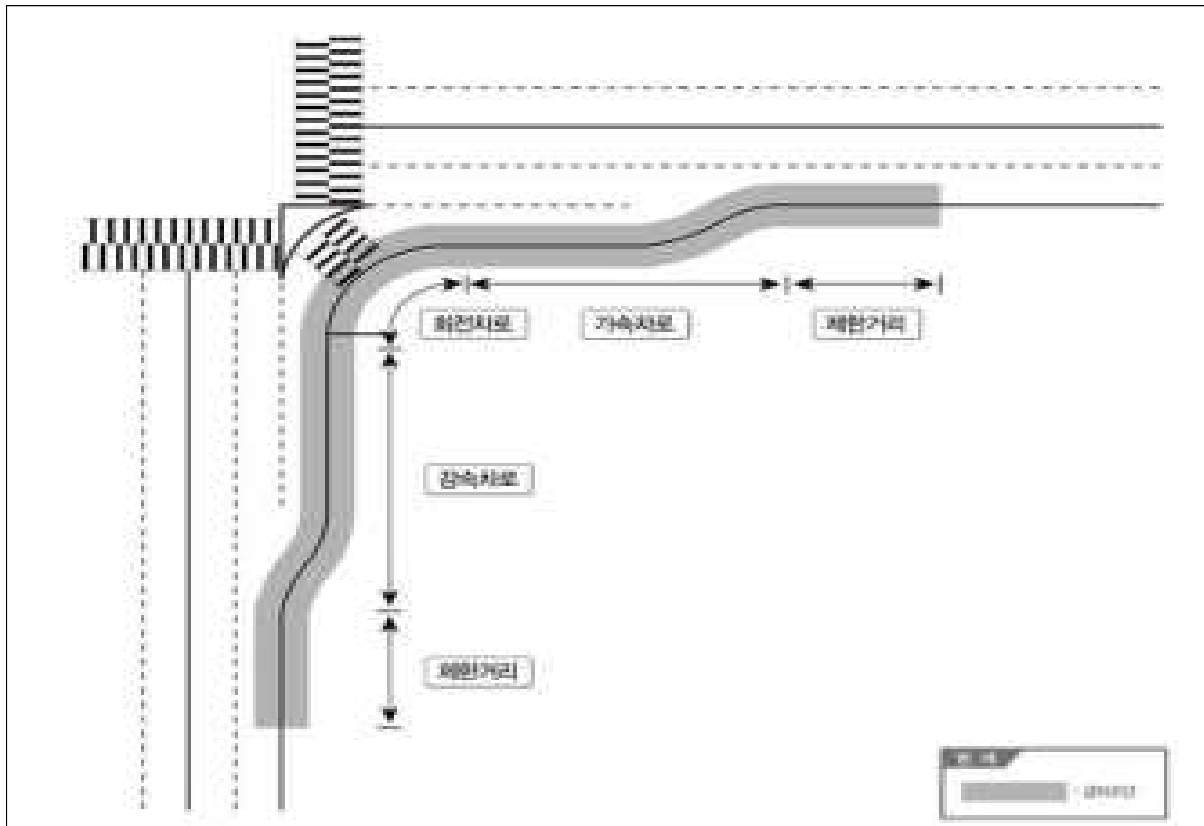
나. 제한거리는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가속·감속차로 전방·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그 밖의 지역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10	20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3. 입체교차로에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입체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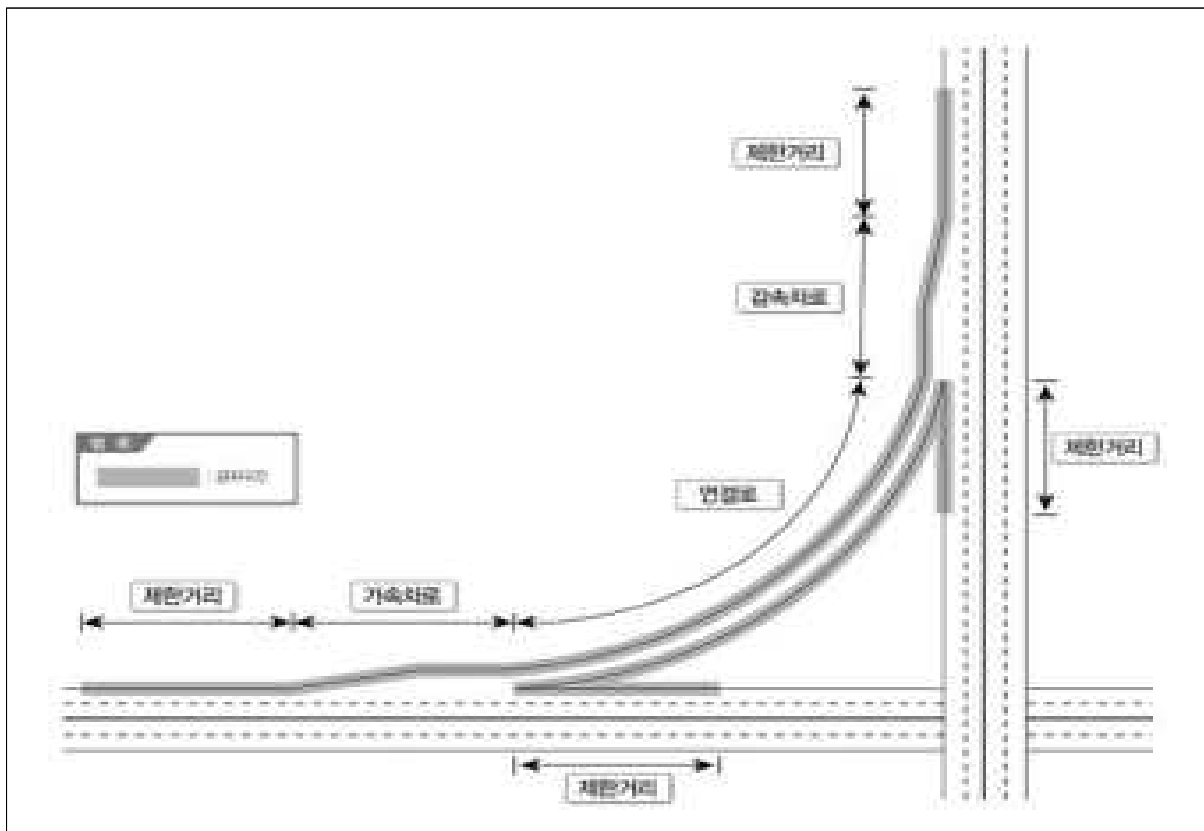
나. 제한거리는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방·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4차로 이상	2차로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60	45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입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시 설	주차 대수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	-	40 (25)	15 (10)	65 (45)	20 (15)
나. 휴게소·주유소 등	-	40 (25)	15 (10)	65 (45)	20 (15)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라. 사도·농로·마을 진입로 또는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교 통용 통로 등	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	15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20대 이하	15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바. 주차장·건설기계 주기장·운수시설· 의료시설·운동시설 ·관람시설·집회시 설 및 위락시설 등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사. 공장·숙박시설· 업무시설·근린생활 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아.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20가구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			

	(100가구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101가구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시 설	주차 대수 (가구 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나. 휴게소·주유소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 (20)	10 (10)	60 (40)	20 (20)
라. 사도·농로·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 (15)	10 (10)	40 (30)	20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1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11대 이상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바. 주차장·건설기계 주기장·운수시설 ·의료시설·운동 시설·관람시설· 집회시설 및 위락 시설 등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사. 공장·숙박시설 ·업무시설·근린 생활시설 및 기타 시설	2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21대 이상 5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5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아.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 하)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100가구 이 하)	30 (20)	10 (10)	60 (40)	20 (20)
	(101가구 이 상)	45 (30)	15 (10)	90 (65)	30 (20)
자. 농어촌 소규모 시 설(소규모 축사 또 는 창고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항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1일
------	------	------	-----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 내용	① 연결 목적		② 점용기간	
	점용장소 · 점용면적 (m ²)			
	공사 실시방법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도로 복구방법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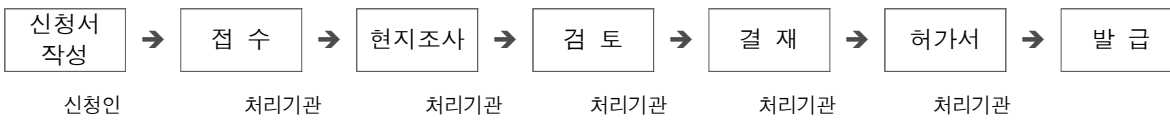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 내용	① 허가번호		당초 허가기간
	② 연결 목적		
	점용장소 · 점용면적 (m ²)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연장 사유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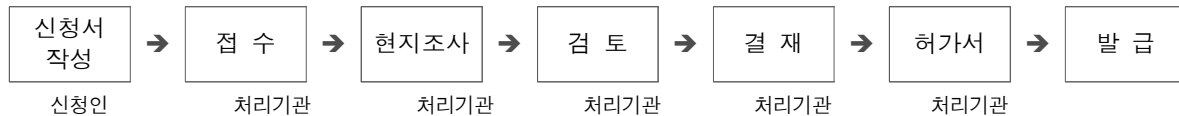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 내용	① 허가번호		허가기간
	② 연결 목적		
	점용장소·점용면적 (m ²)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변경내용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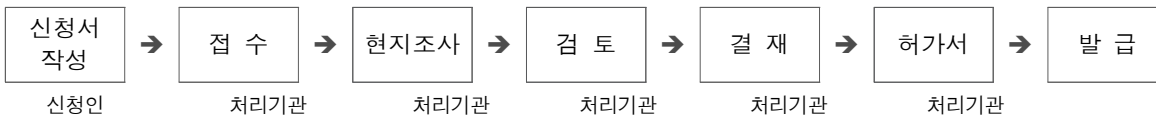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내용 관계 도서	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사서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결 개요	도로종류 및 노선명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도로의 연결지점
	사용 목적

도로 시설물 시공 현황	시공물량				미시공물량			
	시설명	단위	물량	사업비	시설명	단위	물량	사업비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현황조사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

관계 법령

□ 도로법

-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